

대구지방법원 2022. 8. 23 선고 2021가단14857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호

변 론 종 결 2022. 8. 9.

판 결 선 고 2022. 8. 23.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D와 피고 사이에 2021. 8. 24.과 2021. 9. 9. 체결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모두 취소하고,
나. 피고는 위 D에게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21. 8. 25. 접수 제12299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같은 등기국 2021. 9. 10. 접수 제12989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D를 상대로 제기한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가소341595)에서 위 법원이 2020. 12. 15. “D는 원고에게 5,942,376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그 중 288,624원에 대하여는 연 16%, 3,160,377원에 대하여는 연 22.7%, 2,400,000원에 대하여는 연 2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D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주문 제1항의 가.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하고, 피고에게 2021. 8. 25.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2021. 9. 10.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각 마쳐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D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에 관하여 체결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D에게 2019. 11. 5.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합계 1억 원의 사업자금을 대여하고 이에 관하여 2021. 8. 24. D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 8. 31.경부터 2021. 9. 10.경까지 합계 1,500만 원의 생활자금을 대여하고 이에 관하여 2021. 9. 9. D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D에 대한 위 각 대여금채권의 담보조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로받았을 뿐이므로, 선의이다.

나. 판단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인

별지